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

지원 내용

- 1. 취업지원 서비스(1유형, 2유형 공통)
 - 취업지원서비스: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
 - 사후관리 :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* 지원
 - 취업처 정보제공,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, 유선상담 등

2. 소득 지원

- 1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 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지급
- 2유형: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
- 공통 :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
- 단,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

신청자격

• 연령

만 15세 ~ 69세

• 거주지 및 소득

1유형- 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- 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서, 취업경험 무관)2유형-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
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-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-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• 학력

제한없음

• 전공

제한없음

• 취업 상태

미취업자(단,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)

• 특화 분야

제한없음

• 추가 단서 사항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,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

• 참여 제한 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에는 참여 가능)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-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(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*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-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
제목 없음 2